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[ ]총포 / [ ]도검 / [ ]석궁 [ ] 일시 수출입 / [ ] 일시 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	법인명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 :)	
	대표자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 :)	
신청 내용	업체명	
	목 적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(총포·도검·석궁)의 (일시 수출입·일시 소지허가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○○학교장 / ○○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부 2. 총포·도검·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·검토	→	결재	→	결과통보
(신청인)		(경찰서 총포·화약담당부서)		(경찰서장)		(신청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